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. 7. 21 선고 2022가단1059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2. 7. 7.

판 결 선 고 2022. 7. 21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2017. 5. 16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7. 5. 16. 접수 제20829호로 경료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의 D에 대한 채권

1) 주식회사 E는 2009. 10. 12. D에게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(이하, ‘이 사건 대출금채권’이라 한다),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주식회사 F에게 양도하였고, 주식회사 F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2017. 9. 11.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였다.

2)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차전10052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 위 법원은 2021. 2. 22. “D은 원고에게 10,112,517원과 그 중 1,697,945원에 대하여 2021. 1. 6.부터 완제일까지 연 48.545%의 비율에 의한 금원”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하였고, 위 지급명령은 2021. 1. 29. D에게 도달되었는데, D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2021. 2. 16. 확정되었다.

나. D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

D은 2005. 5. 19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(이하, ‘이 사건 지분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, 계모인 피고와 사이에 2017. 5. 16.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(이하, ‘이 사건 증여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7. 5. 16. 접수 제20829호로 지분이전등기(이하, ‘이 사건 지분이전등기’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, 2호증, 을 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위 기초사실에 따르면,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D의 무자력

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,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D은 이 사건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.

다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1)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

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,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D은 이로써 원고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.

2)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

가) 피고는,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배우자인 G과 공동으로 구입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와 G의 아들인 H의 공동명의로 한 것인데, H이 101아파트에 입주하여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된 이 사건 지분을 피고 앞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나)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(대법원 2000. 3. 10. 선고 99다55069 판결).

다) 이 사안에 관하여 보건대, 설령 H이 2005. 5. 19.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할 당시 피고와 G이 매수자금을 전부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, G이 아들인 D에게 이 사건 지분에 대한 매수자금을 증여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지분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라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

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.

판사 임대호

별 지 목 록

1. 건물의 표시

경기도 이천시 외 1필지
 호
 [도로명주소] 경기도 이천시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경기도 이천시
 2. 경기도 이천시

지 목 : 대

면 적 : 1,562m²

대지권의 종류 : 1, 2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의 비율 : 1,562분의 86.78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제3층 호

철근콘크리트조 59.43m²

